

BMC 변경절차에 관한 지침('10.5.25)

1. 현장평가기간 외에 변경할 경우

- BMC 변경신청서*와 산출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서면평가를 원칙(기술평가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자료를 인정위원회에 상정 심의)으로 하나 필요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음

2. 현장평가기간 중에 변경할 경우(신규/갱신/추가/사후)

- 현장평가 실시 1주일 전까지 BMC 변경신청서와 산출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현장 평가에서 기술평가사의 검토의견***을 받은 자료를 인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 사무국은 변경신청서와 산출보고서를 접수하고, 사본을 평가반에게 송부

주* 운영요령에 따라 『별지9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이때 신규, 갱신, 추가 평가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 생략

주** 사무국에 제출한 산출보고서와 현장평가사의 산출보고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기술능력부족에 해당되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 산출보고서 끝 여백에 간단명료하게 변경사유와 검토의견(예시: "표준장비를 재교정함에 따라 변경된 BMC산출 결과를 인정함")을 쓰고 서명

비고1) BMC 변경은 합당한 '변경사유' ('신규장비 구입' 또는 '표준장비 재교정'에 따른 측정불확도 향상 등)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사가 '검토의견' 기입 시에 '변경사유'를 반듯이 기입)

비고2) BMC산출보고서 작성일은 BMC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이어야 하며 제출 후인 경우에는 '작성일이 늦은 합당한 사유'를 기입하지 않는 한 기술능력부족에 해당됨